

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(18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7차) 승인

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322호(2023.6.23.)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(17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6차)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(18차) 및 실시계획 변경(17차)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7조 및 11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02-2133-7079)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(02-3410-759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23년 12월 18일
국토교통부장관

1. 예정지구 지정 변경

- 가.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
- 1) 명 칭 :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
 - 2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
 - 3) 면 적 : 476,229.8㎡ (1공구 : 296,986.7㎡, 2공구 : 168,004.7㎡, 3공구 : 11,238.4㎡)
- 나. 예정지구의 지정(변경)일자 : 고시일
- 다.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(변경없음)
- 1) 명 칭 : 서울주택도시공사
 - 2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 - 3) 대표자의 성명 : 사장 직무대행 김현동
- 라. 개발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- 1)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 - 2)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 - 3) 교통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 - 4)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 - 5)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- 마. 사업시행기간(변경)
- 착 수 일 : 2007. 7. 25
 - 준공예정일 : 기정 - 1공구 : 2019. 12. 30, 2공구 : 2023. 12. 31, 3공구 : 2023. 12. 31
변경 - 1공구 : 2019. 12. 30, 2공구 : 2024. 12. 31, 3공구 : 2024. 12. 31

바. 토지이용계획 (변경없음)

1) 총괄

구 분		면 적(㎡)				구성비 (%)	비 고
		계	1공구	2공구	3공구		
합계		476,229.8	296,986.7	168,004.7	11,238.4	100.0	-
주택 건설 용지	소계	195,569.0	182,729.8	12,839.2	-	41.1	-
	도시형생활주택	12,839.2	-	12,839.2	-	2.7	-
	공동주택	180,856.2	180,856.2	-	-	38.0	아파트
	근린생활시설	1,873.6	1,873.6	-	-	0.4	-
공공 시설 용지	소계	280,660.8	114,256.9	155,165.5	11,238.4	58.9	-
	도로	61,612.8	19,233.3	41,483.8	895.7	12.9	철도 중복결정 (895.7㎡)
	철도	5,844.9	-	-	5,844.9	1.2	도로, 녹지 중복결정 (5,393.5㎡)
	주차장	6,190.3	6,190.3	-	-	1.3	3개소
	공원	64,587.2	38,986.5	25,600.7	-	13.6	3개소(유수지 7,975.3㎡포함)
	녹지	75,797.9	27,753.0	43,547.1	4,497.8	15.9	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3개소 철도중복결정(4,497.8㎡)
	공공공지	5,854.7	4,825.8	1,028.9	-	1.2	8개소
	종교시설	659.8	659.8	-	-	0.1	1개소
	학교	13,174.0	-	13,174.0	-	2.8	초등학교1개소
	교육시설	1,801.1	-	1,801.1	-	0.4	유치원 1개소
	창업지원 복합시설	2,999.0	-	2,999.0	-	0.6	-
	공공청사	12,655.4	-	12,655.4	-	2.7	2개소
	도시지원시 설	26,356.1	15,924.5	10,431.6	-	5.5	2개소
	가스공급설비	25.0	25.0	-	-	0.0	1개소
	배수지	2,443.9	-	2,443.9	-	0.5	1개소
	노유자시설	658.7	658.7	-	-	0.1	1개소

2)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
3)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생략

사.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
- 면 적 : 476,229.8㎡

아.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 및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(변경없음) : 기재생략

자.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(변경없음) : 기재생략

차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전화 : 02-2133-7079)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(전화 : 02-3410-7595)에 비치

2. 실시계획 변경

가. 사업의 명칭 (변경없음) :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

나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
- 2) 면 적 : 476,229.8㎡

다.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·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(변경없음)

- 1) 명 칭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2)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
3) 대표자의 성명 : 사장 김현동

라. 사업시행기간 (변경)

· 착 수 일 : 2007. 7. 25

· 준공예정일 : 기정 - 1공구 : 2019. 12. 30, 2공구 : 2023. 12. 31, 3공구 : 2023. 12. 31

변경 - 1공구 : 2019. 12. 30, 2공구 : 2024. 12. 31, 3공구 : 2024. 12. 31

마.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바.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사.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

1) 공시송달 대상 :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

2) 공시송달 방법 :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,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
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자.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차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